

대법원 2015. 5. 28 선고 2015다1179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

박AA

피 고

대한민국 외 1인

변 론 종 결

2015. 05. 28.

원심판결 2015. 1. 8. 선고 2014나2816 판결

주 문

주 문

1.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2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

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